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68
----------	-------

발의연월일 : 2025. 11. 21.

발 의 자 : 김남희 · 이연희 · 박해철
김우영 · 송재봉 · 이수진
한민수 · 남인순 · 허종식
이학영 · 오세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건강보험 사무대행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을 받은 업무대행 기관이 사업장의 사용자를 대신하여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상실 명세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업무처리지침인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규정된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지정 절차 등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동 업무는 건강보험 가입자격, 보험료 납부 등 국민의 권리 및 의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사례와 같이 업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및 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에도, 현행 「웹EDI 업무대행

위임 처리기준」에 따르면, 업무대행기관을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과 달리 다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사무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보험 업무에 관한 위임관계의 공적 관리 및 신뢰성을 강화하고 영세사업자의 보험사무와 관련한 업무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명세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자격, 업무 범위, 인가에 관한 사항,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6장의2 신설).
- 나.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장부비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9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의2 보험사무대행기관

제86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 ① 사업장의 사용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또는 경영지도사(이하 “법인등”이라 한다)는 사용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업장에 관한 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의 취득 명세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의 변동 명세 신고 등 사용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 및 법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3(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고지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함으로

써 그 사용자에 대한 고지를 갈음한다.

제86조의4(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78조의2에 따른 가산금, 제80조에 따른 연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제86조의5(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6조의6(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86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97조제1항 중 “사용자”를 “사용자,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한다.

제11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⑤ 제86조의5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업무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8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6장의2 보험사무대행기관</u> <u>제86조의2(보험사무대행기관) ①</u> <u>사업장의 사용자 등을 구성원</u> <u>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u> <u>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 제</u> <u>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u> <u>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및</u>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공인회</u> <u>계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행정</u> <u>사 또는 경영지도사(이하 “법</u> <u>인등”이라 한다)는 사용자로부</u> <u>터 위임을 받아 사업장에 관한</u> <u>신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의 취</u> <u>득 명세 신고, 직장가입자 자격</u> <u>의 변동 명세 신고 등 사용자</u> <u>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여야 할</u> <u>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u> <u>사무”라 한다)를 대행할 수 있</u> <u>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임할</u> <u>수 있는 사용자의 범위 및 법</u> <u>인등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u> <u>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② 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법인등(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수탁대상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소재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려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신 설>

<신 설>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
한 경우

3. 보험사무를 거짓이나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업무가 전부
폐지되거나 제5항에 따라 인가
가 취소된 보험사무대행기관은
폐지신고일 또는 인가취소일부
터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보험사
무대행기관으로 다시 인가받을
수 없다.

⑦ 그 밖에 보험사무대행기관
의 인가 취소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의3(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납입의 고지 등을 보험사무대
행기관에 함으로써 그 사용자
에 대한 고지를 갈음한다.

제86조의4(보험사무대행기관의

	<u>의무) 공단이 제78조의2에 따 른 가산금, 제80조에 따른 연 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 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 한도 안 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u>
<u><신 설></u>	<u>제86조의5(보험사무대행기관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대행기 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 을 적은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 다.</u>
<u><신 설></u>	<u>제86조의6(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 무대행기관이 제86조의2제1항 에 따라 보험사무를 대행한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u>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u>사용자</u>, 직장가입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 동·보수·소득이나 그 밖에	제97조(보고와 검사) ① ----- -----<u>사용자</u>, 보험사무 <u>대행기관</u>----- -----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⑧ (생략) 제119조(과태료) ① ~ ④ (생략) <u><신설></u>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 ----- ----- -----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119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86조의5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u>----- ----- ----- -----.
--	---